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
(의안번호 제66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3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1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지급기준중 시·도의원을 군의회의원으로 수정(안 제4조)
- 보상금 청구시 호적등본 첨부부분을 삭제(안 별지제1호서식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에 명시된 보상금 지급기준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이를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고, 보상금 청구시 첨부하는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서
- 조례의 기본 목적과 그 세부내용을 일치시키고 현실과 부합되게 하여 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금지급근거를 명문화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본 조례를 1994년 9월에 제정하여 1995년도에 1차 개정하였는데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상해보상금 지급대상이 시·도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
- 답 :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것임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0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